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1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및 손금산입 한도 상향 (박수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 2

Ⅰ.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및 손금산입 한도 상향 (박수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박수영의원안</th><th>송언석의원안</th></tr>
<tr><td>□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 ① 기본한도: $A \times B \times \frac{1}{12}$
A: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② 수입금액별 한도
<table><tr><th>수입금액</th><th>비율</th></tr><tr><td>100억원 이하</td><td>0.3%</td></tr><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td></tr><tr><td>500억원 초과</td><td>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td></tr></table>* 「법인세법」 제25조</td><td>□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
○ (현행과 같음)</td><td>□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
○ (현행과 같음)</td></tr>
<tr><td>○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제3항)
- 한도액: ①+②의 20% 추가 적용
- 적용기한: 2025.12.31.</td><td>○ (현행과 같음)</td><td>○ (현행과 같음)</td></tr>
<tr><td>○ <u>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제6항)</u>
- 대상: <u>「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u></td><td>○ <u>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u>
- 대상: <u>「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u></td><td>○ <u>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및 손금산입 한도 상향</u>
- 대상: <u>「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u></td></tr>
</table>

현 행	박수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추진비	비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합계액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합계액
- 한도액: ①+②의 10% 추가 적용	- (현행과 같음)	- 한도액: ①+②의 20% 추가 적용
- 요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 일반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한 지출액 제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12.31.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현행과 같음) ○ (좌 동) ○ (좌 동)

* 박수영의원안 2024. 9. 13. 발의(의안번호 4011), 송언석의원안 2024. 10. 31. 발의(의안번호 5115)

□ 2건의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산입 특례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전통시장 등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기업업무추진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정해지는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임.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2020년부터 종전 2,400만원에서 50% 상향되었음.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로 규정하고 있음.

법 제136조는 기업의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각각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각각 20% 및 10% 내에서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조 9,685억 2,400만원에서 2023년 15조 3,245억 7,1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신고법인수	신고액
2015년	591,694	9,968,524
2016년	645,061	10,895,222
2017년	695,445	10,650,137
2018년	740,215	10,706,509
2019년	787,438	11,164,104
2020년	838,008	11,746,885
2021년	906,325	11,374,032
2022년	982,456	12,699,491
2023년	1,030,960	15,324,57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임.[1]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임.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상품권,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며 할인율은 5~10%임. 개인은 유형별로 구매한도가 150만원~200만원이고, 법인은 구매한도가 없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개인 및 법인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구 분	할인율	구매한도
개인	지류상품권 5% 충전식카드형상품권 10% 모바일상품권 10%	지류상품권 150만원 충전식카드형상품권 200만원 모바일상품권 200만원
법인	충전식카드형상품권 10% 모바일상품권 10%	없음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발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9년 1,772억원에서 2024년 3,514억원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음.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및 발행금액]

(단위: 억원)

연도	예산		발행금액			
	본예산	추경예산	지류	카드형	모바일	계
2019	1,772	-	20,000	8	66	20,074
2020	2,313	2,070	39,000	8	1,479	40,487
2021	2,749	207	28,000	1	3,572	31,573
2022	2,883	-	30,000	560	4,831	35,391
2023	2,898	-	12,890	3,963	3,389	20,242
2024(계획)	3,514	-	14,000	26,000	10,000	50,000

자료: 입법조사처,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2024. 5.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상점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으로 전통시장이나 점포가의 일 방문자 수가 3억명~4억 3,00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24.9%의 추가 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2)]

둘째,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촉진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소상공인 체감 BSI[3)]는 55.4로 2023년 8월 BSI 6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4년 9월 전망 BSI는 82.8임.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소상공인 부문별 BSI 추이]

구분	분류	2023년					202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BSI	체감	63.6	-	69.6	63.6	59.0	48.1	50.0	64.5	64.8	64.4	57.3	54.5	55.4
	전망	83.6	82.8	95.7	89.4	84.9	79.5	65.2	74.6	73.1	73.4	67.4	57.9	56.6
판매실적 (매출)	체감	62.9	-	69.6	65.2	60.4	48.0	51.0	63.9	65.1	65.3	58.9	57.3	55.6
	전망	80.0	83.6	93.6	88.7	82.6	76.8	65.6	74.9	77.7	73.8	69.0	58.8	57.7
자금사정	체감	66.9	-	71.8	68.8	64.4	51.5	52.0	63.6	65.0	65.3	61.9	58.1	58.7
	전망	80.7	80.4	90.9	86.4	82.8	79.2	64.2	72.0	74.8	71.4	68.7	62.4	59
비용상황	체감	113.2	-	107.1	109.6	111.5	107.0	107.4	108.9	108.9	107.0	110.5	113.1	119.6
	전망	108.0	115.0	101.0	103.5	108.7	106.8	103.6	105.5	109.3	109.3	105.4	116.7	115.1
구매 고객수	체감	65.1	-	71.8	65.9	61.8	49.9	53.0	66.2	66.2	65.9	58.9	56.1	55.3
	전망	81.3	84.0	95.1	89.4	81.9	78.2	67.9	77.1	79.6	75.1	69.5	59.2	57.6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한국국제경제학회, '온누리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2. 11.

3)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또한,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6.5%p 증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임.[4)]

개정안은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송언석의원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이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늘릴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확대되는 만큼 상향된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손금산입이 가능해져 세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액에 연동되어 판매가능한 상품권 규모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및 사용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대체할 뿐 온누리상품권의 총 판매액 및 사용액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2023년 기준 누적발행액 21조 1,964억원 중 누적 미판매액은 7,070억원으로,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상당 부분이 판매되고 있음.

4)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구매액]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2018년	15,016	64,197	14,916	60,610	3,587
2019년	20,074	84,271	16,853	77,463	6,808
2020년	40,487	124,758	40,139	117,602	7,157
2021년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2022년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023년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온누리상품권은 10%의 할인율[5]로 할인발행되므로 기업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단계에서 이미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적인 손금산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음.

셋째, 박수영의원안은 손금산입 한도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손금산입 특례 대상을 전통시장 지출액에서 온누리상품권 지출액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는 상점가 등에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전통시장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등이 포함됨. 따라서 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전통시장 내 지출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로 대체될 수 있음.

5) 추석 등 일정 시기에는 특별할인발행을 하여 할인발행률을 10%보다 상향하는 경우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